

[국세]
[지방세]

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신청인	① 법인명(상호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(성명)	
	④ 업종	⑤ 전화번호
	⑥ 소재지(주소)	

⑦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내용 구분

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·매각의 유예

납부할 세액(체납액)의 내용					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		
⑧ 세목	⑨ 연도/기분	⑩ 납부기한 (독촉기한)	⑪ 본세	⑫ 가산금	⑬ 계	⑭ 본세	⑮ 가산금

분납금액 및 납부기한

⑯ 횟수	⑰ 세목	⑱ 연도/기분	⑲ 분납기한	⑳ 세액	㉑ 이자 상당 가산액

상호 합의 개시 내용	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				
	㉒ 계약상대국	㉓ 법인명(상호)			
	㉔ 특례 신청인과의 관계				
[] 모자관계(지분을 %) [] 본점·지점 관계 [] 기타(관계:)					
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					
㉕ 직위		㉖ 성명			

㉗ 특례 신청기간

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(년 월 일)부터 종료일까지
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·지방자치단체장 귀하

첨부서류	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소재지(주소)(⑥):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를 적습니다.
2. 납부할 세액(체납액)의 내용 및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
 - 가. 납부할 세액이 고지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예정 내용을 과세처분에 준하여 적습니다.
 - 나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6항 전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과 구분하여 함께 적어야 합니다.
3.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(㉔, ㉕),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(㉖, ㉗):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로 적습니다.